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

의 안 번 호	2021

제출연월일: 2022. 11. 10.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○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○ 운용계획 개요

- 타회계 여유재원 미발생으로 **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0원 편성**

○ 기금조성액

(단위: 천원)

2022도 말 조성액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	비 고
	수 입	지 출	증 감		
0	0	0	0	0	

○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: 0원

3. 근거법규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4.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: 따로 붙임